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7월 23일, 부승찬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의원)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

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 6·25전쟁 참전자의 직계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이미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고,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예우와 책임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양시켜 후손에게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계승하는 데 기여
 - 또한 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유사입법례에서 개정안과 같이 유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중 ‘제매(남·여동생)’를 포함한 법률(국가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과 ‘손자녀’를 포함한 법률(독립유공자법)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 필요

- 다만, 현행법 제7조에 따르면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의무가 발생하나,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범위 간에 상이한 문제 발생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를 유가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정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붙임] 1.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를 유가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형제자매의 자녀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조(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2. (개정안과 같음)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3.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 ----- ----- ----- -----.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라. 손자녀</u> <u>마. 증손자녀</u> <u>바. 형제자매</u> <u><신설></u>	<u>사. 형제자매의 자녀</u>

법률 제 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u>라. 손자녀</u>
<신 설>	<u>마. 증손자녀</u>
<신 설>	<u>바. 형제자매</u>
<신 설>	<u>사. 형제자매의 자녀</u>